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

일시 : 2011. 9. 30(금) 10:00~13:0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 세 부 일 정

| 일 시         | 내 용                                           |                                                             |
|-------------|-----------------------------------------------|-------------------------------------------------------------|
| 10:00~10:10 | ■ 개회사                                         | 이재연<br>(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 10:10~10:15 | ■ 참가자소개(사회)                                   |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
| 10:15~10:30 | ■ 연구개요                                        |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
| 10:30~11:00 | ■ 지역사회 협력체계<br>모형개발을 위한<br>학대피해아동<br>보호정책의 과제 | 황옥경 교수<br>(서울신학대 보육학과)                                      |
| 11:00~11:30 |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br>위한 지역사회 협력<br>매뉴얼             | 김경희 관장<br>(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br><br>김민애 관장<br>(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
| 11:30~12:00 | 종합토론                                          |                                                             |



## 목 차

- 세부일정

|              |   |
|--------------|---|
| ■ 연구개요 ..... | 1 |
|--------------|---|

|                                               |    |
|-----------------------------------------------|----|
| ■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br>학대피해아동 보호정책의 과제 ..... | 17 |
|-----------------------------------------------|----|

|                                  |    |
|----------------------------------|----|
|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매뉴얼 ..... | 49 |
|----------------------------------|----|



## 연구개요





# 연구 개요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약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적 양극화, 취업모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자의 방임, 유기 등의 학대를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유년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공격성을 나타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대 받은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장·단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각종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의 조성과 지역주민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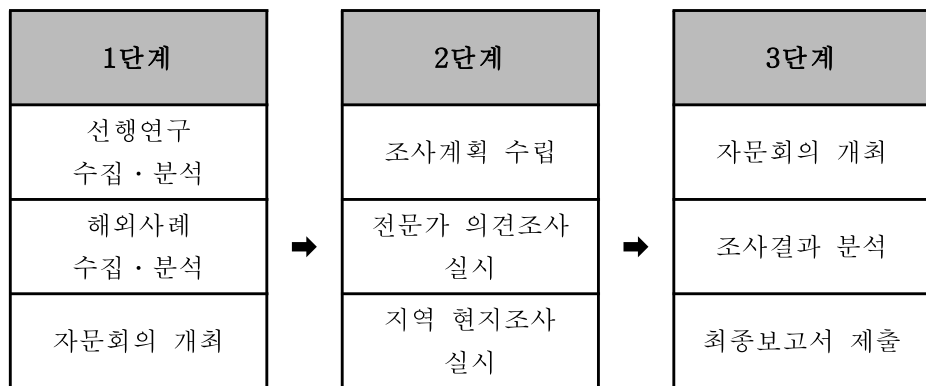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0년 7월부터 이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개칭하여 현재 전국에 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효과성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발달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

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자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을 개발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수행체계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해 가면서 그 피해가 비행이나 가출, 폭력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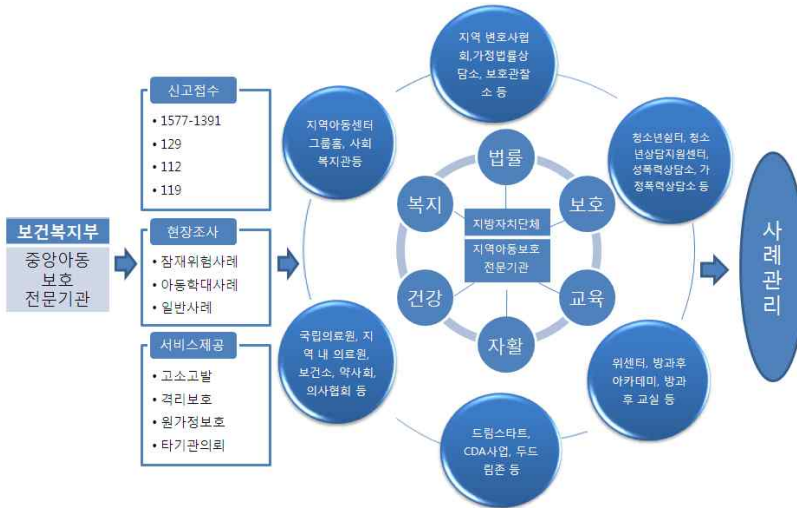
문에 아동학대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에 아동복지법에서는 가해자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학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지행위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이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피해당시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확충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단계별로 신고·현장조사·서비스제공·사례관리 등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뿐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나 그룹홈 등의 민간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 및 역할 구분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협력관계와 직·간접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가 부적절한 양육환경이라는 피해아동 개별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한계와 맹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Swift(1995)**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야기된 보호아동의 발생은 개별 가정의 차원에서 발생한 결과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회 전체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에 대해 **Naparstek(1997)**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일정한 활동으로 규정하였고, **Weil(1996)**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규범을 유지·강화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모형개발의 근간이 되며, 이는 과거의 학대 피해 개별아동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 방법으로부터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서비스 통합 중심의 새로운 문제해결 접근모형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기본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와 같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지역 자원 및 협력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사례 개입 단계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별 자원 등 조사

- 지역사회 활용 자원 및 연계체계 현황 조사
- 지역별 활용자원 및 연계체계에 대한 편차 연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협력체계 모형 개발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자원 활용방안 마련
-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

다. 아동학대 사례 개입 단계별 지역사회 역할 규정

-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제공, 사례관리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마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규정

## (2)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수요량 도출을 위한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법에서는 공공서비스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의 실패 즉, 시장의 불완전성과 불완비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인하여 정부개입이 필요한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고, 일반 공공재와 구분되는 특성은 입지에 따른 불균형적 이용으로 설명된다.

또한 공공서비스시설의 배치는 입지이론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가 특정공간에 들어서게 될 때 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가’를 밝혀 주는 이론으로, 대표적으로는 거리, 가격, 토지이용간의 상호작용 법칙에 따른 동심 원지대이론, 총생산비 최소 지점을 설명하는 최소비용이론,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그 영향에 관심을 두는 지역분석이론 또는 최대수요 이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이론에 따른 수요량과 배치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지역별 아동인구, 아동학대 발생수준, 아동보호시설 이용량 및 수용인원 등 효율성 기준과 지역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접근성, 이동거리 등 형평성 기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수요량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설치 지역 비교조사를 위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역과 비설치 지역에 대한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율의 관계성 조사

나. 아동인구, 이용량, 수용량, 접근성, 이동거리 등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정 수요량 도출

## 2)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검토

-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아동학대 발생 현황 관련 공식통계 수집·분석
- 아동학대 관련법률 분석 :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 연구와 관련된 해외 사례 파악·분석
  - 미국, 일본 등 선진사례 수집·분석
  -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2)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300명 내외

| 구분     | 조사개요                         |
|--------|------------------------------|
| 모집단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br>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
| 표본크기   | 300명                         |
| 표본추출틀  | 해당분야 종사자 리스트                 |
| 표본배분방식 | 기관별 유의할당                     |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 조사지역   | 전국                           |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

- 조사내용
  - 현재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관련된 협력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설치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등 의견수렴
  - 담당공무원 조사를 통해 비설치 지역의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 파악

### (3) 지역 현지 조사

- 지역사회 협력체계 운용 기관 사례 파악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사례 파악
  - 우수사례 수집·분석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설치 지역 현황 조사
  - 설치지역과 비설치지역 간의 아동학대 발생실태 비교분석
  - 설치지역과 비설치지역 간의 아동보호 협력체계 비교분석

| 구분          | 설치지역 | 기관명  |
|-------------|------|------|
| 중앙 및 시도(거점) | 중앙   | 중앙   |
|             | 서울   | 서울   |
|             |      | 서울동부 |
|             | 부산   | 부산   |
|             | 대구   | 대구   |
|             | 인천   | 인천   |
|             | 광주   | 광주   |
|             | 대전   | 대전   |
|             | 울산   | 울산   |
|             | 경기   | 경기   |
|             |      | 경기북부 |
|             | 강원   | 강원   |
|             |      | 강원동부 |
|             | 충북   | 충북   |
|             | 충남   | 충남   |
|             | 전북   | 전북   |
|             | 전남   | 전남   |
|             | 경북   | 경북   |
|             | 경남   | 경남   |
|             | 제주   | 제주   |

| 구분       | 설치지역 | 기관명   |
|----------|------|-------|
| 시군구(소규모) | 서울   | 서울강서  |
|          |      | 서울은평  |
|          |      | 서울영등포 |
|          |      | 서울성북  |
|          |      | 서울마포  |
|          | 부산   | 부산동부  |
|          | 인천   | 인천북부  |
|          | 경기   | 경기성남  |
|          |      | 경기고양  |
|          |      | 경기화성  |
|          |      | 경기부천  |
|          |      | 경기남양주 |
|          | 강원   | 강원원주  |
|          | 충북   | 충북북부  |
|          |      | 충북남부  |
|          | 충남   | 충남남부  |
|          | 전북   | 전북서부  |
|          |      | 전북동부  |
|          | 전남   | 전남목포  |
|          | 경북   | 경북안동  |
|          |      | 경북포항  |
|          |      | 경북구미  |
|          | 경남   | 경남서부  |
|          | 제주   | 서귀포   |



#### 4.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 정책동향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재 전국에 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 연구동향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관련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의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호(2006)의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이명진·조주연·최문경(2007)의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곽병선(2008)의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김종세(2008)의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문영희(2009)의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등의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사와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 아동학대와 지역사회 협력 관련 연구 : 정윤수·이정희(2003)의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네트워크 분석, 김현정(2008), 전국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춘화 외 3인(2010), 위기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등 매우 소수의 연구에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조사와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 5.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기대효과

-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보호 예방을 주로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기관)을 연계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연계모형을 개발함.
- 현재 전국에 3,000여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으로의 활용도를 제고함.
- 농어촌 및 중·도시 등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특성(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에 적합한 전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활용도 및 아동인구 등을 기준으로 정부차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수요를 도출함.

### 2) 활용방안

- 다양한 아동보호기관 운영 근거 마련 등 아동의 피해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호시설을 전문화하여 운영토록 제도화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모형 개발을 통한 아동학대 진행 단계별 국가·지자체·민간 시설의 지역사회내 아동보호 네트워크 효율화를 추진함.
- 국가차원의 아동보호전문시설의 적정 수요량 도출 및 배치 기준에 따른 국가아동보호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함.

## 6.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연구내용이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지역자원 및 협력체계 현황 조사, 아동학대 사례 개입 단계별 협력체계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설치 지역 비교 조사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영역별 내용에 전문적 특성이 있으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
- 자문회의 등 현장전문가 초청을 통해 연구내용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함.

## 참 고 문 헌

- 구본용 외 7인(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곽병선(2008).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법학연구, 제31집.
- 권희경, 장재홍(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제1호.
- 기광도(2005).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범죄간의 관계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 김경호(2006).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 제1호.
- 김영지·방은령·박정선(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지·성윤숙·김명선(2009).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운희(2007).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4호.
-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43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중세(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법학연구, 제31집.
- 김현정(2008). 전국 학대피해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광, 104권.
- 대한간호협회(2006).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모형개발.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사업. 서울: 보건복지부.
- 도미향·남연희·이무영·변미희(2010). 아동복지론, 제2판. 공동체.
- 문영희(2009).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0권 제3호.
- 박세경 외 5인(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8).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지침. 서울: 보건복지부.

- 윤혜미(2003).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의 위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5호.
- 이명진·조주연·최문경(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통권 14호.
- 이미정(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춘화 외 3인(2010).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2000).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운수·이정희(2003).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3호.
- 加藤曜子(2008). 要保護児童対策地域協議会への移行期における課題. 流通科学大学論集, 第20巻第2号.
- 加藤曜子(2010). 市町村ネットワーク; 調整機関の役割-要保護児童対策地域協議会調整機関と個別ケース検討会参加機関調査から, 流通科学大学論集, 第22巻第2号.
- 藤木昇(1998). 児童相談所. 講座少年保護 3. 大成出版社.
- 邪須宗一(1996). 家庭の病理」大橋薫編. 社会病理学有斐閣双書.
- 森望(2002). 児童自立支援施設のあり方をめぐって. 少年法の新たな展開. 有斐閣.
- 内閣府(2009). 青少年白書. 内閣府.
- 坪井裕子(2005). 被虐待児の支援に関する現状と課題, 名古屋大学大学院教育発達科学研究科紀要, 第52巻.
- 下泉英雄(2007). 虐待の発見と早期予防, 母子保健情報, 第55号.
- Ashcraft, R.F.(2003). *Collaborations and coalition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D. Wertlieb, F. Jacobs, & R.M. Lerner (Eds.), Promoting positive youth and family development: Community systems,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Volume 3 of Handbook of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Promoting positive child, adolescent, and family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policies, and programs, (pp.27-51).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arnes, J., Katz, I., Korbin, J. E., & O'Brien, M(2006). *Children and families in communities: Theor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enson, P.L.(2003).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building communities: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s*. In R.M. Lerner & P.L. Benson (Eds.),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 building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p. 19-43).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ooth, A. & Crouter, A.C. (Eds.)(2001). *Does it take a village?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nnell, J. & Kubisch, A(2001). *Community approaches to improving outcomes for urba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A. Booth & A.C. Crouter (Eds.) *Does it take a village?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pp.177-20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aro, D. & Dodge, K. A(2009). Creating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on: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The Future of Children*. 19(2), 67-93.
- Finkelhor, D(2009). The prevention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Future of Children*. 19(2), 169-194.
- France, A(2001). Involving communities in the evaluation of programmes with "at-risk" children and young people. *Children & Society*, 15, 39-45.
- France, A. & Crow, L(2001). *CTC - the story so far: An interim evaluation of communities that care*.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reenwald, H. P., Pearson, D., Beery, W. L., & Cheadle, A(2006). Youth development, community engagement, and reducing risk behavior.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7(1), 3-25.
- Kubisch, A.C(2005). Comprehensive community building initiatives - ten years later: What we have learned about the principles guiding the work.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06. 17-26.
- Kubisch, A.C., Auspos, P., Brown, P., Chaskin, R., Fulbright-Anderson, K., & Hamilton, R(2002). *Voices from the field II: Reflections on comprehensive community change*.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정책의 과제**





#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학대 피해 아동보호 정책의 과제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며

아동학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해 왔다. 1930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아동학대방지령 실시문제’에 나타난 기사の内容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상이 오늘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설은 아동학대방지령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동의 학대는 예로부터 잇는 것이요, 그것이 실지로 나타나는 방면은 다양하다. 고로 학대의 ..... 몹시 일을 시키는 것도... 몹시 때리는 것도 사학대의 일태일 것이다. 아동학대란 기아를 원숭이나 노리개가 터 유용해야 돈을 버는 행위를 확하는 것이다. 고로 아동학대방지령의 대상으로 하는 바는 이 학대를 금지하자는데 잇는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는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볼 것인가의 아동학대 규정의 문제와 더불어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주제이다. 이런 까닭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과정에서 가족의 극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서비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만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개입의 수준도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보호령의 제정을 촉구한지 70여년 만인 지난 2000년

아동학대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포함하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제도적 아동보호 체계가 마련 된지 10여년이 흐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45개소가 되었고, 4만5천여 명의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실제 아동학대 발생율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회복 불가능한 학대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는 일명 ‘나영이 사건’이 있었으며, 2010년 6월 ‘김수철 사건’, 2011년 2월에는 광진구 ‘영아사망’사건 등 이다. 이 아동학대 사건들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2011년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폭행, 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 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위험정도에 따른 개입(이봉주 2006, 윤혜미, 2008 ), 신고제의 한계(황옥경, 2009), 그리고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황옥경, 2003, 2006, 2008; 이정희 2006)에 대한 그동안의 제안과 지적을 충분하게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높은 아동학대 재신고 발생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은 더더욱 아니다.

대다수 많은 아동들은 위험한 학대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그동안 제기되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한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각 각의 문제점에 내포될 수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논의의 전반적인 과정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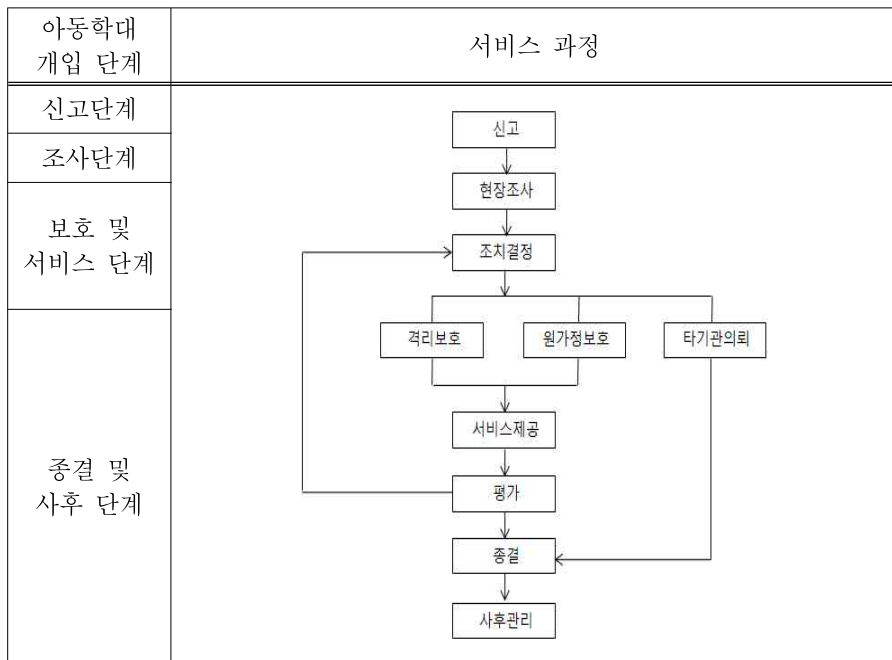
## 2. 아동보호서비스 체계<sup>1)</sup>

### 1)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신고단계

-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1391, 129, 112를 통해 24시간 접수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를 신고(아동복지법 제25조항)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2005년 7월부터 신

1) ‘II. 아동보호서비스체계’ 는 이재연, 황옥경, 장화정, 이은주, 강현아, 한지숙 (2011 발간예정)아동학대 및 예방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음.

고의무자가 자격취득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행정의무를 부과하였다. 2011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동복지법 75조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복지법 제25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 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동법 제7조2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동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그 종사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동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동법 제19조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제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직원

#### • 신고접수 기관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으로의 아동학대 신고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게 되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사기관으로의 신고할 경우는 ‘아동학대 혐의를 가진 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다.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신고단계에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긴밀한 연계를 갖도록 하였다.

### (2) 조사단계

#### 가. 현장조사

2인 1조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등을 만나 학대여부와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긴급격리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현장조사 시 상담원들은 증거확보를 위해 카메라, 녹취기와 아동상담을 위한 심리검사도구, 해부학적 인형 및 그림, 그리고 관련 서류 및 호신용 장비를 구비한다.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가 진행되고 있거나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그 외에는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어 조속한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조속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을 받고 있다.

#### 나. 사례판정

사례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시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긴급격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아동학대사례 판정이 어렵거나 피해아동의 보호자 및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사례회의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례판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아동학대사례, 잠재 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구분되며, 아동학대사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로 세분화된다.

### (3) 보호 및 서비스 단계

#### 가. 조치결정

현장조사와 사례판정을 토대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아동이 실제로 양육된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조치와 실제 양육된 곳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격리보호조치, 그리고 사례의 특성상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도록 전적으로 연계하는 타기관 의뢰조치가 있다.

#### 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는 지속관찰,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 타 기관 의뢰가 있다.

#### 나.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사례판정 이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욕구에 따른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우선순위별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법을 모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이다.

### (4) 종결 및 사후 단계

피해아동의 후유증이 치료되고 학대로부터 안전이 보장될 때 사례를 종결

하게 되는데, 아동학대 사례를 종결하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위험사정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요인, 보호자요인, 학대행위자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 보호요인의 점수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확인하고 사례를 평가한다. 또한 피해아동과 가족을 사례종결과정에 참여시키고, 자체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수립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달성한 목표 또는 긍정적 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례개입이 종결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제공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6개월 이상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3. 현행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의 한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학대 아동의 보호서비스 체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신고제의 개선

; 잠재된 아동학대 위험 군에 대한 개입 요구

신고제에 의존한 현행 아동보호제도는 모든 학대 아동의 발견이 불가능하다.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율과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은 아동 수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먼저, 아동학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준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학대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고 이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신고되어야 하는 매우 소극적인 제도이다. 발견되지 않고 남겨진 학대아동이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사망에 이르

는 사건들은 모두 잠재된 위험군에 대한 무관심과 신고제도의 소극성이 가져온 결과이다. 최근 들어 신고율이 감소하고 있다. 법적 징벌 혹은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여전히 남겨진 아동이 있게 된다.

신고제의 한계에 대한 해법으로 위험정도에 따른 차등대응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이봉주, 2006)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의 서비스 제공 및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법제화하고 위험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서비스를 통해 가족위기 사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황옥경, 2009)도 있다.

잠재된 아동학대 위험군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 아동학대 위험군의 요소를 규정하고 해당 가족에 대해 지방정부 공무원이 Key Worker 가 된다.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기록 한다.
-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정부의 Key Worker와 함께 가족 방문을 정례화하고 가족 위험 사정을 통해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학대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을 숙지한다. 가정방문자는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정방문에 필요한 자료(양육정보, 안전환경 등)는 정부가 제작 배포한다. 가정방문자는 지역의 공공기관 소속이 되도록 한다.
- 잠재된 위험군에 대한 자료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관련자간 공유하고 정기적 미팅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평가한다(황옥경, 2011).

## 2) 관련법의 정비

### (1)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중앙과 지방의 45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민간기관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다. 민간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은 아동 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여러 법적 절차와 조치가 요구되고, 아동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에 의한 아동보호서비스는 많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조사과정에서 상담원의 신변위험이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강제할 수 있는 추진 주체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황옥경, 201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학대행위자나 아동의 보호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는 아동복지지도원이나 관계공무원과 같이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는 학대행위자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인해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학대 행위자가 현장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한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의 동행으로 조사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행정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서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7조 1항)”

이외에도 행정기관은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아동보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행정기관의 아동보

호서비스 과정에서의 개입은 강제조항은 아니다. 행정기관의 조사과정 참여는 의무요건이 아닐뿐더러 행정기관이 조사과정의 핵심주체도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 그리고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행정기관의 참여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는 공공의 개입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학대 아동의 보호라는 공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기관의 개인 가족 생활 개입 등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줄고,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아울러 관련기관들의 참여를 지역에 상관없이 체계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할 수 있고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계체계 구축과 핵심추진 주체의 선정

아동보호는 개입될 수 있는 관련기관이 다양하다. 누가 서비스의 추진 주체가 되고 관련기관의 역할과 의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서비스의 책임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학대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사실상 민간에 위탁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조사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정보보호의 윤리적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제도가 서비스 개입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는 온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해결되어야 한다. 핵심추진 주체가 명시되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기관 차이 및 지역 편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3) 아동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신체, 방임, 정서, 성학대의 네 가지 범주의 아동학대로 판정될 때 제도적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의 개념은 축소된 아동보호 입장을 취한다. 이 경우 학대사실이 확인된 아동에 대한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범주를 벗어난 아동 즉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 또래에 의한 따돌림과 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동에게 안전하고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동안전보호(safeguarding)의 개념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 (4) 조사자와 서비스 제공자로의 상담원 분리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상담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동안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다. 신고접수-가정조사-서비스제공-사후관리까지의 전체과정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현 체계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의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도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 직원의 업무 과다와 전문성 부족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회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 (5)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상황 조사의 실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영국의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은 10여 차례 이상의 개입과정에서 빅토리아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동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상태에 대한 평가 및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빈곤가정의 주택지원 상담과정에서도

이 가정의 아동의 복리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개입시점을 놓치지 않고 모든 학대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

#### (6) 잠재 위험사례나 일반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표 1>은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잠재위험과 일반사례 및 피해아동보호사례로 판정된 결과이다. <표 1>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신고사례의 16%~24%의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는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사례판정 결과

| 연도   | 계(건수) | 피해아동보호사례   | 잠재위험사례    | 일반사례       |
|------|-------|------------|-----------|------------|
| 2001 | 2606  | 2105(80.8) | 313(12.3) | 188(7.2)   |
| 2002 | 2946  | 2478(84.1) | 298(10.1) | 170(5.8)   |
| 2003 | 3536  | 2921(82.6) | 343(9.7)  | 272(7.7)   |
| 2004 | 4880  | 3891(79.7) | 454(8.9)  | 555(11.4)  |
| 2005 | 5761  | 4633(80.4) | 427(7.4)  | 701(12.2)  |
| 2006 | 6452  | 5202(80.6) | 397(6.2)  | 853(13.2)  |
| 2007 | 7083  | 5581(78.8) | 468(6.6)  | 1034(14.6) |
| 2008 | 7219  | 5578(77.3) | 491(6.8)  | 1150(15.9) |
| 2009 | 7354  | 5685(77.3) | 444(6.0)  | 1225(16.7) |
| 2010 | 7406  | 5617(76.4) | 506(6.8)  | 1243(16.8) |

문제는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 아동이 안전한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는 가이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가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충분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된다.

학대로 판정되어 서비스를 받은 아동과 판정되지 않아 서비스에서 제외된

아동의 행동발달 성과에 별 차이가 없고, 이 두 집단과 한 번도 신고 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Hussey 등(2005)은 밝혔다.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된 적이 있는 80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Hussey 등의 연구결과는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학대로 신고 된 아동이 아동학대와 방임을 평가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양육이 염려되어 신고 대상자가 되었다는 자체를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Hussey 등(2005)은 학대판정과 증거확보가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는 현행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 3) 아동학대에 대한 의회의 시각

아동학대에 대한 의회의 시각과 태도는 대중의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킨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국의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은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촉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다.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 이후 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 결과 아동법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토니블레어는 10개월 동안 최소한 10회의 위기개입 시점을 놓쳐서 Victorie Climbie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기존의 아동보호 제도를 ‘실패한 아동보호서비스’로 규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잉글랜드아동법 2004의 탄생을 가져왔다.

지난 2월 있었던 광진구 3세 아동사망사건과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대응방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을 대하는 두 나라의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 <서울 광진구 3세 아동 사망사건 >

2011년 2월 보도된 ‘서울 광진구 3세 아동 사망사건’은 언론에 사건기사가 보도되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친모는 두 명의 아이 양육으로 인해 기소유예판정을 받았다.

## <영국 7세아 빅토리아 크림비 사망사건>

빅토리아 크림비는 Ivory Coast 태생으로 프랑스를 거쳐 이모와 이모의 남자친구와 함께 영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학대로 2000년 2월 25일 사망하였다. 빅토리아는 유럽시민권으로 11개월 동안 영국에서 생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3개 법 즉 아동법, 경찰법, 보건서비스법을 근간으로 의회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무려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회조사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조사위원장은 당시 내무부장관과 보건부장관의 임명을 받았다. 4명의 전문 조사관이 조사의 처음부터 종료시까지 조사의 모든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위원장의 활동을 총괄지원하는 비서가 임명되었고, 전문조사원 1명과 이를 보조하는 직원 2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조사시 필요한 자료 수집을 도왔다. 법적 지원과 자문을 위해 전담변호사가 배치되었다. 주택분야 위원의 협조가 있었고 관련 단체의 지원도 받았다. 의회조사과정에서 155명 이상의 증인이 채택되었고 외국에 체류중이던 4명의 증인은 화상연결을 통해 조사받았다.

의회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차 의회조사과정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1단계조사는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의 전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단계 조사는 향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단계 사건발생조사과정에서 빅토리아 생부모는 영국에 와서 조사받기 위한 여행비용 일체를 영국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조사비용은 정부와 관련 단체가 부담하였다.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모임이 있었고, 조사활동에 관심을 표명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었다. 2001년 1월 빅토리아를 학대하였던 이모와 그녀의 동거남은 살인죄가 적용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의 이모는 3명의 아들이 있다.

조사과정의 모든 내용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고 2001년 9월 30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약 300백만명이 접속하였다. 방문자의 평균 방문시간은 20분이었다. 이는 인터넷 평균 접속시간이 3분인 것과 비교하면 긴 시간이다.

2단계 조사과정에서 2개월 간 5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아동을 위한 국가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2004년 아동법에서

영국 아동권리커미셔너(Children's Rights Commissioner)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의회의 관심은 제도 변화 및 서비스 지원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의회의 관심은 단순히 사건을 사회적으로 이 슈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의회조사의 과정에서는 광범위한 관련자 조사가 필요하다. 빅토리아 조사보고서 문건을 보면 관련자의 범주가 상세 하게 구분되어 있다. 빅토리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각 기관의 담당 직원들에서부터 지역주민 목격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조사과정에 시민의 참여 또한 가능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는 조사의 객관 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대중의 인식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과도 연결되며 정책모니터링의 주요 참여자가 될 수도 있다. 조사과정의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4) 예방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현행 아동보호체계 하에서도 예방노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례보고서에 등장하는 예방노력은 대개 일반국민, 익명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차원의 예방노력인 1차 예방에 치우쳐 있다. 각급학교학생, 공무원, 교사, 군인, 학부모 등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부모교육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등도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와 방임 발생을 예방할 수는 있겠으나 전문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위험집단이라 불리는 인구계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예방적 접근(2차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윤혜미, 2011).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일단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 되어야 하고,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가정조사 등을 통해 판정받아야 서비스가 집중

적으로 주어진다. 이는 현재의 아동보호사업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치료적이고(remediation) 나아가 징벌적(punitive)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윤혜미, 2011). Hussey 등(2005)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도 성장환경의 위험 노출 상황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예방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만성적 빈곤, 한부모 가정, 낮은 교육 및 수입, 2명 이상의 자녀, 10대 및 20대 초반의 어린 부모, 우울 등의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 예방의 기본 전제가 된다.

다음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잠재 위험군에 대한 예방이다. Loman 등은 현재의 아동보호신고체계에 신고 되었으나 학대사례로 판정되지 않아 서비스가 유보된 사례들이 일차적 예방대상으로 보았다. 학대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대나 방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피해와 가해의 역학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부모 및 가족에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통한 예방이다. 홍보는 아동학대 예방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아동학대 예방 뱃지를 나누어주고 아동학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예방캠페인 문구가 새겨진 쓰레기 수거 비닐 봉투 등을 각 가정에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전국 어디서나 아동학대 관련 소책자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일회성의 행사나 반복적으로 볼 수 없는 홍보 동영상은 그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영국 ITV는 매일 저녁 황금방송시간대에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 4.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면 법과 제도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Jack, 2004). 영국은 2004년 아동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보호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동법 2004(Children's Act 2004)은 아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필요를 제공받고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추구하도록 돕는 것은 공적책임이며, 가족을 지원하는 것도 공적기관의 몫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험상황에 처해있을 때 조사의 책임과 의무도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아동보호서비스의 핵심추진주체가 되고 관련기관의 지역협조체제를 관장한다.

본 장에서는 영국의 지역사회 협력 모델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1) 아동법 2004(Children's Act 2004)에 나타난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보호의 핵심 분야이다. Victoria Climbié 사건은 영국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사회는 아동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 내지는 공동대응이 무엇보다 요청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을 사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국가의료서비스(NHS)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부는 Victoria Climbié 사건이 아동보호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던 기관들이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Lord Laming, 2003). 2002년 처음 출간된 아동보호서비스 지침서(Safeguard Children, 2002)는 특별한 경우의 아동 및 일반 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둘 다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Every Child Matters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아동법 2004(Children's Act 2004)

에 반영되었다.

아동안전보호(safeguarding)의 의미는 2002년에 출판된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당시 아동안전보호(safeguarding)와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를 동일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의미하는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보다는 아동의 전반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관점인 아동안전보호(safeguarding)의 개념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아동안전보호(safeguarding)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분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정부는 아동안전보호(safeguarding)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Ofsted, 2008).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 아동의 건강과 발달적 손상을 예방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받으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이후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DfES)의 조사 후 거의 모든 교육표준국(Ofsted) 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가 아닌 광범위한 아동보호 활동을 펼쳐왔다. 이후 아동보호(safeguarding)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아동법 2004(Children's Act 2004)는 아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필요를 제공받고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추구하도록 돕는 것은 공적책임이며, 가족을 지원하는 것도 공적기관의 몫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일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적기관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조사과정을 통해서 아동이 보호받아야 하는 지 혹은 아동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잉글랜드 아동법 2004(Children Act 2004)는 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과 더불어서 각 지역 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것이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동법 2004(Children

Act 2004)는 아동의 복지욕구를 확인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아동보호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평가틀(Common Assessment Framework ; CAF)을 새로이 마련할 것도 명시하였다.

2005년 이후부터 지방정부는 매년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평가보고서(annual performance assessment:APA)와 지역연합평가보고서(joint area reviews:JARs)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어떻게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지 그리고 특정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 아동보호서비스의 구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s)의 주도로 관련기관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서비스 전달의 핵심기제로 채택하고 있다.

### (1)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oards:LSCBs)

아동법 2004는 지방정부가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s)를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민간조직이었던 각 지역의 아동보호위원회가 정부기구로 대체되었다. 2006년부터 4월 1일 이후 잉글랜드의 150개 지방정부가 아동복지 증진과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s)를 설립하였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s)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추진주체이다. 아동보호서비스 실행지침서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위원회를 ‘아동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기관과 종사자들이 지역아동보호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협조체계를 증진하여 아동보호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특정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
- 보호가 필요하거나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을 위한 사전예방 프로그램 제공
-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복지증진

영국은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과 심의 등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와 서비스 전달 기구가 별도로 작동한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보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실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동단체연합(CHILDREN'S TRUST)에게 있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지역아동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아동단체연합(Children's Trust)은 서비스를 전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각 지역은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그 역할을 확대한다.

2007년 현재 대부분의 지역아동보호위원회 대표를 민간이 아닌 공적 신분을 지닌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하고 있다. 전체 지역아동보호위원회중 34%가 민간대표이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아동보호서비스의 대표를 맡게 되면 해당지역의 아동보호서비스와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업무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

Stockport는 분기별로 아동보호업무 담당자,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대표, 시 대표, 시 관련부서의 대표 등이 참가하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대표는 정기적으로 지역의 아동청소년 담당 직원 및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를 만나 아동보호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2006년 처음 그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보다 업무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부터이다.

- 공적기구의 서비스 과정 불참

여러 공적기구 즉 Connexions services, Cafcass and the Youth Offending Service 와 같은 기구들이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아동보호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원의 어려움

어떤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학대아동의 보호, 위탁보호, 일시보호, 시설 보호 등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들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줄 만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이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관련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90%이상의 자선기관과 각 커뮤니티센타가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의 참여정도는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89%, 사립학교의 18%가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Dfes)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피학대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업무는 <표 2>과 같다.

<표 2>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업무 우선순위

|    | 순위                     | 빈도  |
|----|------------------------|-----|
| 1  | 아동보호 참여 인력의 안전성 확보     | 47% |
| 2  |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의 유지       | 31% |
| 3  | 아동 사망 분석 위원회 운영        | 28% |
| 4  | 포괄적인 아동보호서비스           | 26% |
| 5  | 서비스의 질 확립 및 모니터링 체계 수립 | 26% |
| 6  |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  | 25% |
| 7  | 따돌림의 감소                | 23% |
| 8  | 가정폭력 감소                | 20% |
| 9  | 훈련 프로그램 제공             | 18% |
| 10 | 관련기관의 아동보호절차에 대한 평가 분석 | 15% |

출처: Ofsted, 지역아동보호위원회 조사, 2007

아동법2004에 의거 지방정부의 주도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각지방정부가 아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능력과 최일선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처리하는 역량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상당히 명확한 아동보호서비스 판단의 준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반응하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 (2) 전략적 파트너쉽

관련기관간의 파트너쉽은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2005년 이후부터 이는 더욱 중시되고 있다. Every Child Matters는 관련기관의 파트너쉽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간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 관련기관에 의한 연합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 예산분배 시점이 달라 연계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아동의 성학대와 폭력의 위협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 이에 관여해야 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연합단체에서 Youth Offending Teams (YOTs)의 역할, 기능이 모호하다.

두 번째로 출간된 아동보호지침서(Safeguarding children, 2005)는 아동보호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관련기관들 간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은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서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직원들의 책무성이 결여된 데에서 일부 기인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고위직 직원이 아동보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아동보호 기관 공동지침서(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2006)는 아동보호 사안을 다룰 때 어떤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할 지 혹은 개별 기관이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HM Government, 2006). 사회복지기관이나 경찰 등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들은 보호서비스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위험상황에 처해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계, Cafcass, YOTs, parts of the police service and youth offender institutions 영역에서 관련기관간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아동보호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아동 요구 평가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동보호서비스에서 공통아동학대 사정척도(The Common Assessment Framework :CAF)를 사용하는 것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조기에 확인하고 관련기관 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보호 관련 지침서의 제공 및 서비스 과정 등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

한 전반적인 지역연합평가분석(Joint Area Reviews:JARs,) 결과 아동보호서비스는 대체로 잘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은 지역의 아동 관련자들에게 아동보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인식시키고 있었다. 학교는 아동보호교사를 임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아동보호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발견되었다.

영국 내에서 아동보호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CPS가 있다. 어떤 지역의 CPS는 아동학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CPS는 범죄행위인 성폭행과 가정폭력을, 그리고 아동학대를 함께 다룬다.

아동학대 평가자는 정책과 서비스 실행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이 진행된다. 자살 등으로 아동이 죽거나 아동학대 혹은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이다. 아동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례 등이다.

이런 형태의 사례가 발견되면 각 지역 아동보호국은 사례분석위원을 위촉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사고발생 지역의 아동서비스 담당 부서, 건강, 교육분야 그리고 경찰 등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사례의 심각성을 Working together의 평가도구를 통해 확인한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개별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을 모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5.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

연계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보편화된 일반적 원칙은 없다. 이는 연계체계 자체가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여 복잡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의 성공요인은 1.전략수립(Strategic), 2.연계체계 운영(Operational), 3.지역사회와 민간기관의 참여(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involvement), 4.평가(Evaluation)의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http://www.everychildmatters.gov.uk>).



### 1) 전략수립

- 공통의 목표를 수립  
: 공동의 목표를 수립할 때 네트워킹이 보다 간결하게 작동된다.
- 시간계획을 수립  
: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시간을 배분
- 각 관련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규정  
: 구조가 간결할수록 기관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회의도 최소화할 수 있다.
- 기존의 협력체계를 활용  
: 시간을 단축, 효과 상승
- 동일한 행정적인 한계
- 각 지역의 기초자료 확보

### 2) 연계체계의 운영

- 비전과 목적의 명료화
- 각 기관의 역할규정
- 인력활용  
: 보수와 조건이 비슷한 인력들이 팀을 이루도록 함. 공동교육 네트워킹에 필요한 기술 습득(Common Core of Skills and Knowledge for the Children's Workforce 개발)
- 기관 간 협약체결
- 정보의 교환

### 3) 민간기관의 참여

- 필요한 자원(예 재정) 지원,
- 피드백
- 외부장애요인 극복

- 내부 장애요인 극복(재정, 물리적 환경, 역량부족, 리더십의 결여, 관리역량)

#### 4) 평가

- 다양한 평가방법
- 비슷한 평가척도의 사용 : 각 기관이 사용하는 평가도구가 비슷한 내용, 수준이어야 함.
- 도전 :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했다고 평가하지 않음.

이와 같은 요인들은 지역사회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체계 수행규정이나, 업무 매뉴얼, 평가척도 및 지침, 교육계획 등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형태

영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계체계는(HMSO, 2004; 2005) ①관련기관의 위원선정(multi-agency panel), ②관련기관의 팀구성(multi-agency team), ③통합서비스(integrated service)의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관련기관의 위원선정(multi-agency panel)은 관련자들이 자기가 원래 근무하던 기관에 소속된 직원 신분으로 연계체계에 참여하는 모델이고, 관련기관의 팀구성(multi-agency team)은 연계체계를 이루기 위해 각 소속직장으로부터 차출된 직원들이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이들은 지도와 훈련을 통해 소속기관과 연결된다. 통합서비스(integrated service)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서비스제공 기관들을 끌어들이는다.

다음에 제시될 네트워킹의 형태는 이 세 가지 유형 어느 경우에도 해당된다.

### 가. 최종 목표 수립

지역사회기관들의 연계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실천전략을 개발한다.

- 각 지역과 국가 차원의 목표를 고려
- 목표에 따른 지표 설정
- 각 목표에 대한 세부 수행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관련기관들은 아동보호 서비스를 계획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수립된 국가 목표가 지역사회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관적 국가 정책 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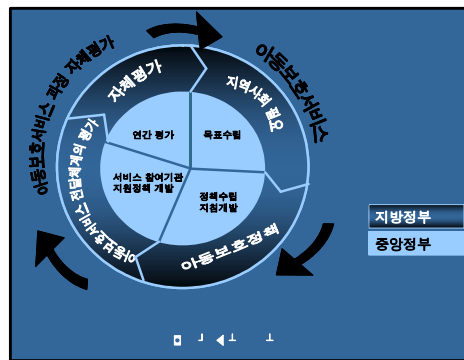
### 나. 필요한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의 참여 제도화

다양한 지역사회기관들이 참여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는 과정이다. 경찰과, 의료인력, 지방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제아동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들을 위한 각종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주요한 협력기관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각 관련 조직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

- 위험으로부터 보호
- 개별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부여
- 효과적인 조기개입
- 효과적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임

다. 공통 평가척도 사용 및 정보공유

방임아동이 보호사업과 관련된 각 지역의 기관들이 독자적인 평가척도를 갖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혼란이 야기된다. 아동의 발달초기에 아동을 대하게 되는 학교, 방문보건인력, 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아동이 처한 위험상황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의 평가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평가횟수를 줄일 수 있다.



## 6. 더 나은 지역사회를 일구어 내기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규정한 44개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피해아동 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학대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 개입, 서비스제공 및 연계,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태에 관한 모든 조치와 관리 수행으로 정리되어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아동학대가 누군가에 의해 핫라인으로 신고 되어야만 작동하는 것이다. 즉 발생이라기보다는 발견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한계가 있으면서 또한 그 사례가 가정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로 판정되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아동보호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책임을 늘려야 하고, 서비스추진의 핵

심주체를 지정 혹은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의 대상과 접근방식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오랜 과제이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더 나은 아동의 삶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Department of Health (2002) A Joint Chief Inspectors' Report on Arrangements to Safeguard Children. London, Department of Health.
- Department of Health(1995). Child Protection: Messages from Research, HMSO.
- DfES(2006).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a review of progress. Nottingham. DfES.
- DCSF(2007).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d Teenage Pregnancy Unit. UK.
- Ofsted(2007). Survey of chairperson of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ondon. Ofsted.
- Safeguard Children(2005). Safeguard Children, The second joint Chief Inspectors' Report on Arrangements to Safeguard Children. London. Ofsted.
- Safeguard Children(2008).Safeguarding Children, The third joint chief inspectors' report on arrangements to safeguard children. London, Ofsted.
- 윤혜미(2010).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예방과 치료의 균형적 접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황옥경(2009). 사회속의 아동. 창지사.
- 황옥경(2010).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에 대한 토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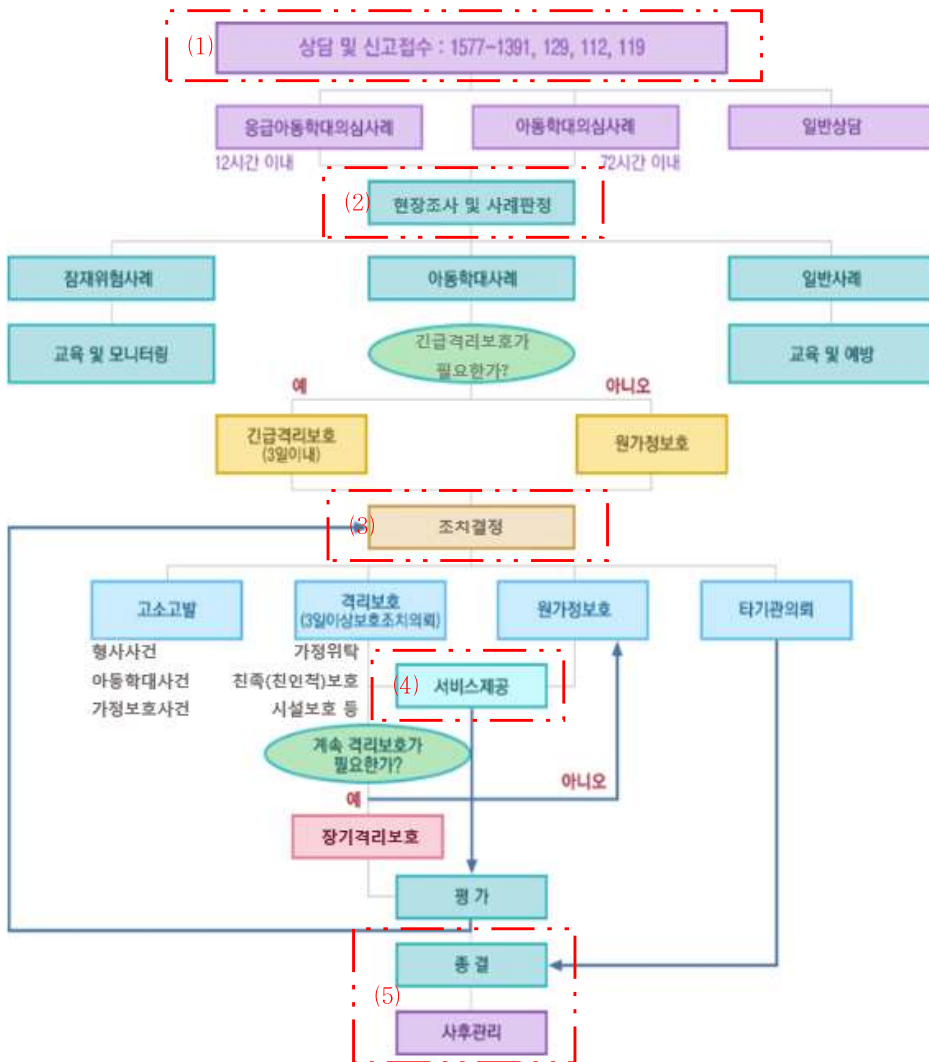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매뉴얼

김경희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민애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1.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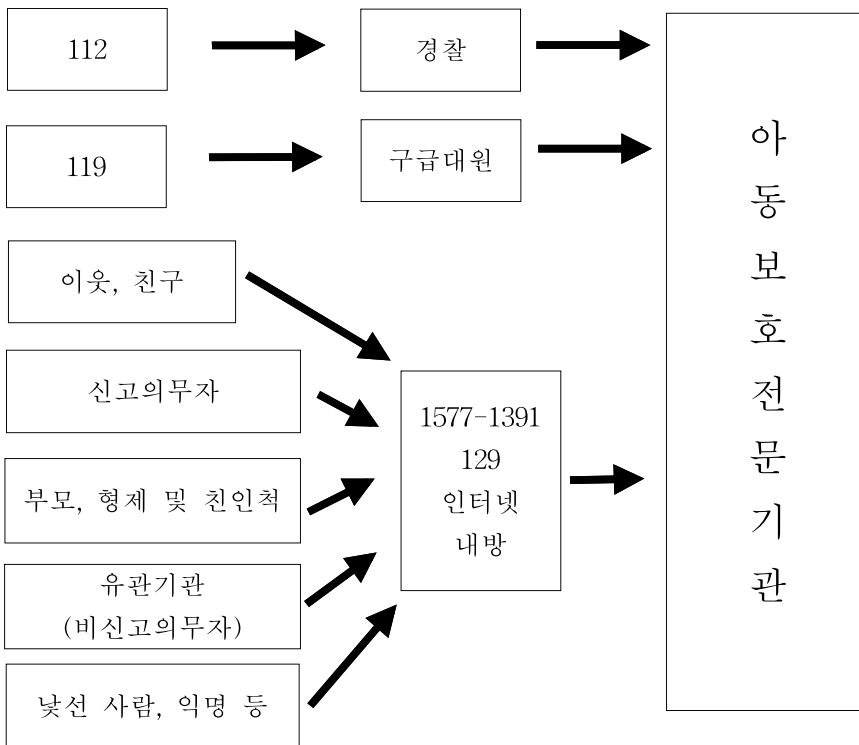


## 2. 아동학대사례 진행 과정에 따른 지역사회협력체계

### 1) 상담 및 신고접수

상담 및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아동학대의심사례와 일반상담을 구분하여 현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아동학대의심사례의 응급성 정도 및 피해아동의 안전여부, 학대의 피해정도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에 그 목적이 있다.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고, 특히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준수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예방교육 및 신고전화 홍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사례관리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고위험아동들의 아동학대사례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sup>2)</sup> 제25조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2) 전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2호 시행일 2012.8.5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2011.9.20\)](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2011.9.2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충분한 기초자료 및 포괄적인 정보 조사, 학대여부 및 학대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수집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사정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아동의 긴급격리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조사단계에서의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오승환,2009 : 207)

|           |                                    |
|-----------|------------------------------------|
| ○ 사법기관    | 경찰, 검찰, 법원                         |
| ○ 행정기관    | 경시청, 구청, 주민센터                      |
|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 ○ 교육기관    | 보육시설, 유·초·중등학교                     |
| ○ 사회복지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일시보호시설, 쉼터, 그룹홈, 아동치료센터 등 |
| ○ 외국인지원기관 | 이주여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 가. 사법기관

경찰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 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은 즉각 현장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폭행·협박·물리적 저항 등으로 상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려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단독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이거나 즉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에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나. 행정기관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동주민센터를 의미하며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신고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담당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보육료지원 등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가정의 현장조사시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하여 학대행위자의 저항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장조사시에 필요한 신분조회는 행정기관의 신분조회 협조의무에 대한 근거법령(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자료를 협조받을 수 있다.

#### 다. 의료기관

응급아동학대사례인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처치와 입원조치를 하고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의학적 진단 및 전문가적 소견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례를 판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의사가 전문적인 소견서를 작성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에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가 알코올문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의심이 될 때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현장조사시에 행위자의 정신과적인 면담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정신병리적인 치료와 입원치료 등을 지원받아 학대행위자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발생한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라. 교육기관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관계자(대부분 교사)로부터 피해아동의 가정환경, 평소 상태 및 학대 징후,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학대행위자의 성향 및 양육 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의 조사 시 교사가 동석하여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마.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정폭력관련기관 등의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는 각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정

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담당자를 통해 가정의 객관적인 현황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현장조사 시에 참고한다. 또한 지역별로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서비스를 방지하고자 사례관리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고 참여하여 현장조사 뿐 아니라 추후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 바. 외국인 지원기관

다문화가정 내 피해아동은 불안, 주의산만, 애착문제 등의 정서, 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적응, 행동 특성 중에서는 학습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를 보인다.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은 학대행위자들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양육 태도와 양육방법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현장조사 시에는 이들의 언어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 (2) 사례판정

사례판정의 목적은 아동학대 사례여부를 판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있다. 사례판정의 방법으로는 첫째 조사자 소견을 통한 사례판정이 있고 둘째 자체사례회의를 통한 사례판정이 있고, 셋째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한 사례판정이 있다.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다. 광역 시·도와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 결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사회의 행정분야, 의료분야, 법률분야, 아동·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의 전문가들로 사례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한 정기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의 진행과정에서의 상시적인 자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김형모, 2008 : 31)

### 3) 조치결정

사례판정 결과를 근거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에 목적이 있다.

조치결정의 유형은 첫째 원가정 보호, 둘째 격리보호, 셋째 가정복귀, 넷째 타기관 의뢰로 나눌 수 있다.

조치결정 유형 중 격리보호는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아동보호능력 및 의사가 없어 재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에게 유해한 생활환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재학대 위험이 높은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격리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아동의 격리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가출하여 가정 내 아동들끼리 생활하고 있는 경우, 아동이 유기되었고 보호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격리보호를 한다. 격리보호의 유형은 친족(친인척)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가 있으며 격리보호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피해아동 전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행정기관, 교육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에서는 입소의뢰요청공문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에 따라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교육기관은 피해아동의 취학지원(비밀전학 및 가전학)과 학적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가 요구되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협력 및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시, 도지사 등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성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One-stop지원센터를 통해 진술내용과 진술녹화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중복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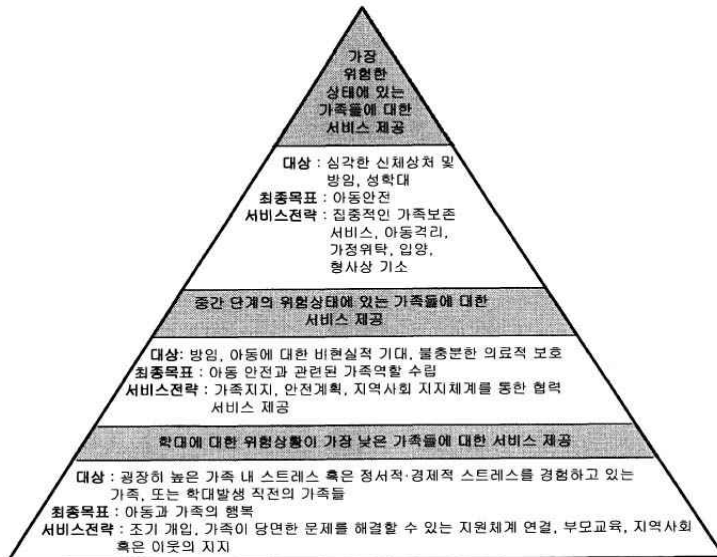
#### 4)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은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주대상으로 하며, 피해아동에게는 학대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학대행위자에게는 학대유발요인을 감소시켜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기능 강화 유도 목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적 접근으로 아동학대로 판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학대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가 필수적이며, 서비스 제공을 학대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김형모, 2008 : 33).



[학대위험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 (1) 상담서비스

상담서비스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욕구, 감정, 피해 경험 및 현재 상황 등을 표출하도록 도우며, 긍정적인 자존중감 증진을 비롯하여 행동 변화, 갈등 해결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가해부모, 가족구성원과 일대일로 상담하는 것
- 나. 집단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가해부모, 가족구성원을 집단으로 상담하는 것
- 다. 기관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가해부모, 가족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과 협의 조정하는 상담방법
- 라. 주변인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가해부모, 가족구성원, 기관(행정기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 소속된 구성원을 제외한 이웃주민, 동거하지 않는 친인척 등과 상담하는 것

사례 특성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시·군·구 사례관리팀,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전담),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 있다.

## (2)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과적 치료와 학대행위자 또는 부모 및 가족의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남용 등을 비롯한 신체적·정신과적 치료를 제공하며, 입원 또는 통원치료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 (3)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놀이, 미술, 음악, 원예, 모래놀이 등), 가족치료, 집단치료(행위자치료 등) 등의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외상을 완화하고 나아가 학대유발요인 감소를 통한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심리치료실 운영(심리치료사 배치 또는 시간제 치료사 활용)을 통해 심리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나, 대상자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가정에 인접한 심리치료서비스기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학대예방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변화이며, 이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대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피해아동의 생활환경 요인을 변화시켜줌으로써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 반찬 지원 등의 가정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공적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도록 한다.

## (5) 교육서비스

- 가. 학대예방교육 - 훈련된 강사가 개별 또는 집단 내 피해아동, 부모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화된 학대예방교육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학대예방교육은 학대행위자의 참여의지와 직결되어 있어 대부분 학대행위자들이 서비스제공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고 법적처분을 통해 학대행위자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나. 학습지원 - 피해아동의 학업 증진 및 심리정서적 발달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학습지도, 현장체험, 학원수업, 문화활동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6) 보호서비스

피해아동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긴급 분리하여 장기보호조치하기 이전에 일시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으로 기관 내 그룹홈이나 지역 내 모자 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일시보호시설 등이 있다.

## (7) 고소·고발 지원서비스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된 이후,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탄원서·진정서 작성 및 제출, 피해아동 법원 출두 시 동행, 보조인선임제도 신청 등이 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과 관련하여 아

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친권의 상실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선고, 후견인의 지정, 부모로부터 아동의 격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 5)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사례종결은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원조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종결과정에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 및 가족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학대 위험의 요소가 감소 또는 제거되었을 때 사례를 종결하게 된다. 특히 사례 종결의 과정에서 가족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성과를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referral)하게 된다.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통합지원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김형모, 2008 : 34).

##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보건복지부(2010), 2011년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오승환(2010). 한국의 학대아동보호정책. 나눔의 집. pp. 203-223  
김형모(200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피학대 아동 발견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임시사회사업연구. 제5권 제2호. pp. 21-40

워크숍자료집 11-S3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

인 쇄 2011년 9월 30일

발 행 2011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 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